

개정 2004. 03. 19

개정 2005. 03. 11

개정 2006. 10. 10

개정 2008. 10. 17

개정 2012. 03. 16

개정 2013. 04. 25

개정 2014. 03. 28

이 사 회 규 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제 2 조 (적 용 범 위)

제 3 조 (권 한)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제 5 조 (의 장)

제 6 조 (감사의 출석 등)

제 7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제 3 장 회 의

제 8 조 (종 류)

제 9 조 (소 집 권 자)

제 10 조 (소 집 절 차)

제 11 조 (의사의 진행)

제 12 조 (결 의 방 법)

제 13 조 (부 의 사 항)

제 14 조 (이사회내 위원회)

제 15 조 (위 임)

제 16 조 (의 사 록)

제 17 조 (사 무 국)

제 4 장 집행임원

제 18 조 (집 행 임 원)

제 19 조 (경영위원회)

부 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가온전선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이사회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본 규정 제 13 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2. 본 규정에서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3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 한다

제 5 조 (의 장)

1.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이에 임한다.
2.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 31 조(理事의 職務) 2에 정한 순서에 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단, 동일 직급의 이사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사회가 정한

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감사의 출석 등)

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8 조 (종 류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하며, 사정에 따라 그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9 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2 명 이상의 이사가 소집한다.

제 10 조 (소집절차)

1. 이사회 소집의 통지는 정기이사회는 적어도 회일 1 주일전, 임시이사회는 적어도 회일 3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사의 진행)

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 질서를 유지하며, 특정

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결의 방법)

1.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단, 제 13 조 1.(15), (17)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2.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부의 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
 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
 - (5) 공동대표의 결정
 - (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7) 지점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 - (8)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, 실권주 발행
 - (9)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
 - (10) 사채의 모집
 - (11)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

- (12)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
- (13)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
- (14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5)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(16) 이사의 경업 승인
- (17)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

2.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
- (2) 영업의 전부,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
- (3) 주식배당
- (4) 외부감사 선임
- (5) 자본감소
- (6) 정관 변경안
- (7) 이사의 선임, 해임안, 보수안

3. 주요 투자에 관한 사항

- (1) 자회사의 설립, 청산, 합병 및 양수도
- (2)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
- (3)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시설투자
- (4) 법인의 경영,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
 - 기술의 도입, 이전 및 제휴에 관한 계약
 -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취득 및 양수도
 - 자원개발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

4.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자산재평가

- (2)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사항
- (3)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
- (4)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- (5)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- (6) 해외증권 시장에 주권등의 상장과 관련한 사항
- (7)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등
- (8)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변제
- (9)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파생상품 손실
- (10) 파생상품 거래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(11)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,처분
- (12)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차입금 증가
- (13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규모 내부거래

5.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

- (1) 전략적 사업방향 및 정책
- (2)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, 목표합의
- (3) 사업보고서, 분기 및 반기 보고서, 연결 및 결합 재무제표
- (4)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

6. 인사관계사항

- (1)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
- (2)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재원 및 CEO의 경영성과급
- (3)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
- (4)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5) 고문, 자문역의 위촉 및 처우
- (6) 상근감사의 선임 및 변경

(7) 이사회내의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7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

제 14 조 (이사회내 위원회)

1.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3. 위원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15 조 (위 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 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의사록)

1.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회의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3.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한다.

제 17 조 (사무국)

사무국은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집행임원

제 18 조 (집행임원)

1.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.

2. 이사는 집행임을 겸직할 수 있다. 다만, 사외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9 조 (경영위원회)

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 년 6 월 9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6 년 10 월 1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8 년 10 월 1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8 년 10 월 1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단, 제 12 조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3 년 4 월 2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 년 3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